



現 行	改 正 案
<p>아. 不動産·賃貸 및 事業서비스業            자. 教育서비스業            차.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            카. 기타 公共·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다. 家事서비스業            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p> <p>〈新 設〉</p> <p>〈新 設〉</p> <p>2. “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인이 다음各目的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第1號에 規定한 事業의의 事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의 集團을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3. ~ 6. (생략)</p> <p>7. “市場支配의 事業者”라 함은 同種 또는 유사한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에 있어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에 해당하는 事業者를 말한다. 다만,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p> <p>가.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の 50이상            나.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の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の 10미만인 者를 제외한다</p> <p>8. ~ 9. (생략)</p> <p>第3條(獨寡占의 市場構造의 개선등)</p> <p>① ~ ② (생략)</p> <p>〈新 設〉</p>	<p>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 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事業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그 事業內容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p> <p>2. ....            ..... 會社.....            .....</p> <p>가. ~ 나. (現行과 같음)</p> <p>3. ~ 6. (現行과 같음)</p> <p>7. “市場支配의 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單獨으로 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去來條件을 決定·維持 또는 變更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 市場支配의 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市場占有率,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競爭事業者의 상대적 規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年間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億원미만인 事業者를 제외한다.</p> <p>8. ~ 9. (現行과 같음)</p> <p>第3條(獨寡占의 市場構造의 개선등)</p> <p>① ~ ② (現行과 같음)</p> <p>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책을 樹立·推進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 調査하여 公表한다.</p> <p>④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p>

現 行	改 正 案
<p>第3條의2(市場支配의地位의 濫用禁止)</p> <p>① (생략)</p> <p>1. ~ 4 (생략)</p> <p>5. 기타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거나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p> <p>② 濫用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p> <p>第4條(市場支配의事業者의 지정·告示)</p> <p>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場支配의事業者를 지정·告示한다.</p> <p>②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場支配의事業者의 지정·告示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産業合理化 또는 國際競爭力의 強化를 위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企業結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다른 會社의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p> <p>2. 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의 兼任”이라 한다)</p> <p>3. (생략)</p>	<p>의한 市場構造의 調査·公表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 및 第4項의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p> <p>第3條의2(市場支配의地位의 濫用禁止)</p> <p>① (現行과 같음)</p> <p>1. ~ 4 (現行과 같음)</p> <p>5. 부당하게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러하거나 .....</p> <p>② 濫用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p> <p>第4條(市場支配의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의事業者로 推定한다.</p> <p>1.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の 50이상</p> <p>2.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の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の 10미만인 者를 제외한다.</p> <p>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① .....</p> <p>.....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株式 .....</p> <p>2. ....</p> <p>.....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p> <p>3.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業結合에 관한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p> <p><b>第8條(持株會社의 設立禁止 등) ①</b> 누구든지 株式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이하 “持株會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없으며 이미 設立된 會社는 國內에서 持株會社로 轉換하여서는 아니된다.</p> <p><b>②</b> 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p> <p>1. 法律에 의하여 設立하는 경우</p> <p>2.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에 의한 外國人投資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立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p> <p><u>〈新 設〉</u></p>	<p>는 企業結合 .....</p> <p><b>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b>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p> <p><b>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 ①</b> 持株會社는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純資産額(資産總額에서 負債額을 差減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會社가 資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會社에 現物出資하고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1年間은 純資産額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할 수 있다.</p> <p>2. 子會社의 株式을 당해 子會社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50(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分の 30)미만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會社가 資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會社에 現物出資하고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에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2年間은 예외로 한다.</p> <p>3. 子會社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會社가 資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會社에 現物出資하고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에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2年間은 당해 國內會社가 발행한 株式을 所有</p>

現 行	改 正 案
<p>(新 設)</p>	<p>할 수 있다.</p> <p>4. <u>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u></p> <p>5. <u>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u></p> <p>② <u>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는 다른 國內會社(당해 子會社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 및 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一般持株會社의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會社가 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가 될 당시에 所有하고 있던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新株引受權의 행사 또는 株式配當에 의하여 취득하는 株式을 포함한다)은 그 子會社가 된 날부터 2年間은 이를 所有할 수 있다.</u></p> <p>③ <u>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b>第3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 등)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를 支配하는 同一人 또는 당해 同一人의 特殊關係人이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0條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의 規定에 의한 기존 債務保證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을 解消하여야 한다.</b></p> <p>1. <u>持株會社와 子會社間의 債務保證</u></p> <p>2. <u>持株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u></p> <p>(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p>

現 行	改 正 案
<p><b>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b>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이 條에서 “<u>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u>”라 한다)또는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의 特殊關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의 會社가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생략)</p> <p>2. 會社의 任員 또는 從業員이 다른 會社의 任員을 兼任하는 경우</p> <p>3.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으로서 企業結合의 當事會社중 1이상의 會社가 大規模會社 또는 市場支配的事業者인 경우에는 각각 <u>合併契約締結·營業讓受契約締結 또는 會社設立에의 參與에 대한 株主總會(또는 이에 갈음하는 理事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u></p> <p>⑤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は 申告後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合併登記, 營業讓受契約의 이행행위 또는 株式引受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期間을 短縮하거나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p> <p>⑥ 大規模會社 및 市場支配的事業者의 者가 第</p>	<p style="text-align: center;">다)間的 債務保證</p> <p>3. 子會社 상호간의 債務保證</p> <p>4. 子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間的 債務保證</p> <p><b>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b> .....</p> <p style="text-align: center;">.....(第2號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規模會社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u>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u>”라 한다) .....</p> <p>.....</p> <p>1. (現行과 같음)</p> <p>2. 任員兼任의 경우</p> <p>3. ~ 4 (現行과 같음)</p> <p>② ~ ③ (現行과 같음)</p> <p>④ .....</p> <p style="text-align: center;">大規模會社인 경우에는 각각 合併契約을 締結한 날, 營業讓受契約을 締結한 날 .....</p> <p>.....</p> <p>⑤ ..... 하여야 하는 .....</p> <p style="text-align: center;">..... 그 期間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 .....</p> <p>.....</p> <p>⑥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公正去來위원회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 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b>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b></p> <p>① (생략)</p> <p>②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가 있는 날부터 適用한다.</p> <p>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會社가 通知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通知가 있는 날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④ ~ ⑤ (생략)</p> <p><u>&lt;新 設&gt;</u></p> <p><b>第14條의3(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b> (생략)</p> <p><b>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b> 누구든지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 1項 및 第3項, 第8條(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第1項,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p>	<p>結合을 하고자 하는 자는 第4項에 規定된 申告期間 이전이라도 .....</p> <p>⑦ .....</p> <p>..... 그 期間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 .....</p> <p>⑧ (現行과 같음)</p> <p><b>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b></p> <p>① (現行과 같음)</p> <p>② .....</p> <p>通知를 받은 날 .....</p> <p>③ ..... 通知받을 당시 .....</p> <p>④ ~ ⑤ (現行과 같음)</p> <p><b>第14條의3(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擬制)</b>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大規模企業集團의 所屬會社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大規模企業集團의 所屬會社로 편입·通知된 것으로 본다.</p> <p><b>第14條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b> (現行과 같음)</p> <p><b>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b> .....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 및 第2項, 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p>





現 行	改 正 案
<p>式的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p>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併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p>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p> <p>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課徵金을 賦課하는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p>	<p>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 제한 등)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p> <p>1.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純資產額을  초과한  負債額</p> <p>2.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2號 本文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 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額에  100分의  50(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分의  30)에서  당해  子會社 株式의  所有比率을  差減한  比率을  곱한  金額을  당해  子會社 株式의  所有比率로  나누어  산출한  金額</p> <p>3.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3號 本文·第4號·第5號 또는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所有하는  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額</p> <p><b>第17條2(履行強制金)</b>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6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期間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金額에  10,000分의  3을  곱한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強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圓의  범위안에서  履行強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p> <p>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新 設〉

現 行	改 正 案
<p><b>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b> ① 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u>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를 할 것을 合意(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 8. (생략)</p> <p>② (생략)</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p><b>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b></p> <p>① (생략)</p> <p>1. (생략)</p> <p>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去來하는 行위</p> <p>3. ~ 7. (생략)</p> <p><u>&lt;新 設&gt;</u></p> <p>② ~ ⑤ (생략)</p> <p><b>第25條(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b> 事業者團體는 그 設立日부터 30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設立事項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이 變更되거나 당해 事業者團體가 解散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併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p>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p> <p>② 履行强制金の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の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b>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b> .....</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당하게 競爭을 .....</p> <p>.....</p> <p>1. ~ 8. (現行과 같음)</p> <p>② (現行과 같음)</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 ~ ⑤ (現行과 같음)</p> <p><b>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b></p> <p>① (現行과 같음)</p> <p>1. (現行과 같음)</p> <p>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行위</p> <p>3. ~ 7. (現行과 같음)</p> <p>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의 行위로써 公正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行위</p> <p>② ~ ⑤ (現行과 같음)</p> <p><u>&lt;削 除&gt;</u></p>

現 行	改 正 案
<p><b>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 ①</b>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告示한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당해 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契約締結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契約事項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契約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申告事項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申告事項의 變更 또는 修正을 命할 수 있다.</p> <p><b>第38條(委員長)</b></p> <p>① ~ ② (생략)</p> <p>③ 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정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b>第42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b></p> <p>① 全員會議의 議事は 委員長, 副委員長 및 先任 常任委員의 順으로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② (생략)</p> <p><b>第43條(審議의 公開)</b>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는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業上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45條(委員의 記名·捺印)</b> 公正去來委員會가 依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p> <p><b>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b></p>	<p><b>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b>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指定·고시한 商品을 生産 또는  판매하는 事業者가 당해 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契約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反하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 있다.</p> <p><b>第38條(委員長)</b></p> <p>① ~ ② (現行과 같음)</p> <p>③ .....          .....          ..... 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b>第42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b></p> <p>① 全員會議의 議事は 委員長이 主宰하며 .....          .....</p> <p>② (現行과 같음)</p> <p><b>第43條(審理·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 ①</b> 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業上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公正去來委員會의 사건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p> <p><b>第45條(委員의 署名·捺印)</b> .....          .....          ..... 署名 .....</p> <p><b>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b></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① (생략)</p> <p>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第65條 (權限의 委任·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u>事務所 또는 事業場에서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 기타의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lt;新 設&gt;</p>	<p>① (現行과 같음)</p> <p>② .....</p> <p>.....</p> <p>.....</p> <p>..... <u>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u> .....</p> <p>.....</p> <p>.....</p> <p>.....</p> <p>③ ~ ④ (現行과 같음)</p> <p>⑤ <u>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大規模企業集團 系列會社의 調査와 관련하여 金融去來關聯情報 또는 資料(이하 "金融去來情報"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資金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情報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의 長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1. 去來者의 人的事項</p> <p>2. 使用目的</p> <p>3. 要求하는 金融去來情報의 내용(不當支援行爲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의 金融機關과의 不當支援行爲와 관련된 金融去來情報에 限한다)</p> <p>⑥ <u>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이 公正去來委員會에 金融去來情報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金融機關은 金融去來情報를 제공한 날부터 10일이 내에 제공한 金融去來情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者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通知하여야 한다.</u></p> <p>⑦ <u>公正去來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대하여 金融去來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記錄하여야 하며 金融去來情報를 요구한 날부터 3年間 同記錄을 보관하여야 한다.</u></p> <p>⑧ <u>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去來情報를 제공</u></p>
<p>&lt;新 設&gt;</p>	
<p>&lt;新 設&gt;</p>	
<p>&lt;新 設&gt;</p>	

現 行	改 正 案
<p>〈新 設〉</p> <p><b>第53條(異議申請)</b> ① 이 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p> <p>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期間내에 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延長할 수 있다.</p> <p><b>第53條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b></p> <p>① (생략)</p> <p>② 이 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p> <p><b>第54條(訴의 제기)</b> ① 이 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第55條의3(課徵金 賦課)</b> ①·② (생략)</p> <p>③ 課徵金の 賦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55條의4(課徵金 納付期間의 延長 및 分割納付)</b></p> <p>① ~ ③ (생략)</p> <p>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間의 延長, 分割納付 또는 擔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55條의5(課徵金徵收 및 滯納處分)</b> ① 公正去來</p>	<p>받은 者는 그 資料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b>第52條의2(資料閱覽要求 등)</b>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자료를 제출한 者의 동의를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第53條(異議申請)</b> ① .....</p> <p>通知 .....</p> <p>② .....</p> <p style="text-align: center;">60日이내</p> <p>.....</p> <p><b>第53條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b></p> <p>① (現行과 같음)</p> <p>② .....</p> <p style="text-align: center;">職權에 의하여</p> <p>.....</p> <p><b>第54條(訴의 제기)</b> ① .....</p> <p>..... 때</p> <p>에는 處分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書의 正본을 送達받은 날부터 .....</p> <p>② (現行과 같음)</p> <p><b>第55條의3(課徵金 賦課)</b> ①·② (現行과 같음)</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の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55條의4(課徵金 納付期間의 延長 및 分割納付)</b></p> <p>① ~ ③ (現行과 같음)</p> <p>④ .....</p> <p style="text-align: center;">또는 分割納付</p> <p>.....</p> <p><b>第55條의5(課徵金徵收 및 滯納處分)</b> ① .....</p>

現 行	改 正 案
<p>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を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納付한 날의 전일까지의 期間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を 徵收한다.</p> <p>② ~ ④ (생략)</p> <p>〈新 設〉</p> <p><b>第60條(일정한 組合의 행위)</b> 이 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 設立된 組合(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行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함으로써 不當하게 價格을 引上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b>第66條(罰則) ①</b>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2 (생략)</p> <p>3. <u>第8條(持株會社의 設立禁止等)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한 者</u></p> <p>〈新 設〉</p> <p>4. ~ 9 (생략)</p> <p>② (생략)</p> <p><b>第67條(罰則)</b>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 5 (생략)</p> <p>6. 第5條(是正措置), 第16條(是正措置)第1項, 第21條(是正措置), 第24條(是正措置), 第27條(是正措置),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第2項, 第31條(是正措置) 또는 第34條(是正措置)의 規</p>	<p>.....</p> <p>.....</p> <p>..... <u>納付한 날</u> .....</p> <p>.....</p> <p>② ~ ④ (現行과 같음)</p> <p><b>第56條의2(記錄의 送付 등) 第56條(損害賠償責任)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제기된 때에는 法院은  필요한 경우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事件의 記錄(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鑑定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要求할 수 있다.</b></p> <p><b>第60條(일정한 組合의 행위)</b> .....</p> <p>.....</p> <p>..... 다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不當하게 競爭을  제한하여 .....</p> <p>.....</p> <p>1 ~ 4 (現行과 같음)</p> <p><b>第66條(罰則) ①</b> .....</p> <p>.....</p> <p>1. 2 (現行과 같음)</p> <p>3. <u>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 各號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u></p> <p>4. <u>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한 者</u></p> <p>5. ~ 10. (現行 第4號 내지 第9號와 같음)</p> <p>② (現行과 같음)</p> <p><b>第67條(罰則)</b> .....</p> <p>.....</p> <p>1. ~ 5. (現行과 같음)</p> <p>6. ....</p> <p>..... <u>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u> .....</p> <p>.....</p>

現 行	改 正 案
<p>定에 의한 是正措置 등에 응하지 아니한 者</p> <p>7. (생 략)</p> <p><b>第68條(罰則)</b>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u>第4條(市場支配의 事業者의 지정·告示)第2項 및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正當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u></p> <p>2. <u>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u></p> <p>3. &lt;삭제 96.12.30&gt;</p> <p>4. <u>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 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u></p> <p>5. <u>第25條(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u></p> <p>6. <u>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契約事項 또는 變更契約事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u></p> <p>7. &lt;삭제 94.12.22&gt;</p> <p>8. <u>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u> &lt;新 設&gt;</p> <p><b>第69條(罰則)</b> <u>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7. (現行과 같음)</p> <p><b>第68條(罰則)</b> .....</p> <p>1. <u>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의 設立 또는 轉換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u></p> <p>2. <u>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u></p> <p>3. <u>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 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u></p> <p>4. <u>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正當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u></p> <p>&lt;削 除&gt;</p> <p>&lt;削 除&gt;</p> <p>5. <u>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u></p> <p>6. <u>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6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u></p> <p><b>第69條(罰則)</b> ① <u>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② <u>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現 行	改 正 案
<p>第69條의2(過怠料) ① (생략)</p> <p>1. (생략)                      &lt;新設&gt;</p> <p>2. ~ 5. (생략)                      &lt;新設&gt;</p> <p>② ~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lt;新設&gt;</p> <p>③ (생략)</p>	<p>第69條의2(過怠料) ① (現行과 같음)</p> <p>1. (現行과 같음)</p> <p>2.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p> <p>3. ~ 6號로 號番변경 (現行과 같음)</p> <p>7.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情報의 提出을 거부한 者</p> <p>② ~ ⑥ (現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p> <p>③ (有效期間 만료에 따른 經過措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p> <p>④ (現行과 같음)</p>



**■ 국장급 진보**

- ▶ 기획관리관      유 철(柳 哲, 前 경쟁국장)
- ▶ 경쟁국장        오성환(吳晟煥,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조사국장        김병배(金炳培, 前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 ▶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동욱(李東旭, 前 기획관리관)
- ▶ 국방대학원 파견    박상조(朴相祚, 前 조사국장)

**■ 부이사관 교육 파견**

- ▶ 세종연구소 파견      허 선(許 宣, 前 기획예산담당관)

**■ 3급과장 진보**

- ▶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수(朴鍾秀, 前 조사1과장)
- ▶ 기획과장              정재찬(鄭在餐, 前 공동행위과장)

**■ 4급과장 진보**

- ▶ 행정법무담당관      이성구(李星求,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제도개선과장        최정렬(崔楨烈, 前 약관심사1과장)
  - ▶ 기업집단과장        이재구(李載求, 前 공정거래위원회)
  - ▶ 공동행위과장        이삼봉(李三奉, 前 하도급1과장)
  - ▶ 단체과장            허찬무(許贊茂, 前 제도개선과장)
  - ▶ 표시광고과장        김태구(金泰球, 前 하도급2과장)
  - ▶ 약관심사1과장        김동주(金洞周, 前 표시광고과장)
  - ▶ 하도급1과장        신호연(申豪鉉, 前 국제업무1과장)
  - ▶ 하도급2과장        김태영(金泰亨,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조사1과장            정병기(鄭秉驥, 前 기업집단과장)
  - ▶ 공정거래위원회      안영호(安永鎬, 前 단체과장)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파견 내정)